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참 고 자 료	보다나은 정부

2019년 11월 8일(금) 오전 9: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19. 11. 8.(금)	담당부서	통상분쟁대응과
담당과장	정하늘 과장(044-203-4880)	담 당 자	김효중 사무관(044-203-4887)

일본 수출제한조치 WTO 분쟁 11.19(화), 스위스 제네바에서 2차 양자협의 개최 예정

□ **한·일 양국**은 **일본 수출제한조치 WTO 분쟁**(DS590) 관련, **11월 19일(화), 스위스 제네바**에서 **국장급**을 **수석대표**(우리측 :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)로 **2차 양자협의**를 **진행**하기로 **합의**함.

【 일본 수출제한조치 관련 WTO 분쟁해결절차 추진 경과】

- **9.11**, 일본의 3개 품목(플루오린 폴리이미드·포토레지스트·불화수소) 수출제한조치 관련 우리측 제소(양자협의요청서(제소장) 송부)
- **10.11**, 1차 양자협의 개최

수석대표	(韓)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 (日)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다자무역체제국장

○ 지난 **1차 양자협의**(10.11)에서 양국은 **2차 협의 개최**에 **합의**하고, 그간 **외교 채널**을 통해 **일시·장소 등**을 **협의**해왔음.

□ **우리 정부**는 **WTO 분쟁해결절차**상 **관련 절차**를 **원칙**에 따라 **신속**하고 **충실하게 추진**하고자 함.

○ 다만, **WTO 협정**이 **본격적인 소송**에 앞서 **당사국간 협의 절차**를 통해 **상호 만족할 만한 조정**을 **시도**하도록 **규정**하고 있는 만큼,

○ **일본 수출제한조치**를 **조속하게 해결**하기 위해 **최선**의 **노력**을 다할 계획임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 김효중 사무관(☎ 044-203-488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 우리측 양자협의요청서 주요 내용

□ **(제소대상) 3개 품목**(① 플루오린 폴리이미드, ② 포토레지스트, ③ 불화수소)에 대한 **일본**의 **對韓 수출제한조치**

○ 일본은 **3개 품목**의 **對韓 수출**시 **포괄허가제**를 **개별허가제**로 **변경 공표**(7.1)·**시행**(7.4~)

□ **(법적근거)** **(상품)** GATT 1조·11조·10조 등
(기술) TRIMS 2조, GATS 6조, TRIPS 3·4·28조

【 양자협의요청서 주요 내용 】

일본 조치	• 3개 품목 및 관련 기술이전시, – 기존 포괄허가 사용 불가(7.4일자로 효력 소멸) – 개별허가 신청 의무화 – 日 경제산업성 본청에서만 개별허가 접수 (지역 심사국에 신청 불가) – 개별허가 관련 복잡한 수출절차 의무화
주요 위반근거	• 3개 품목 수출규제 관련, – 상품무역에 관한 일반협정(GATT) 제1조·제11조·제10조 등 – 무역원활화협정(TFA) 제2조·제6조·제7조·제8조·제10조 등
	• 3개 품목에 관한 기술이전 규제 관련, –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(TRIMs) 제2조 –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(TRIPS) 제3조·제4조·제28조 –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(GATS) 제6조

붙임 2 **WTO 분쟁절차도**

